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52376(본소), 2022가단61998,
2022가단5363(반소), 2022가단68487(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조경진

피고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4.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주, 안민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호, 박상은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박한결

변론 종결2023. 7. 12.

판결 선고2023. 8.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와 피고 B, C, D,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과 원고, 피고 B, C, D,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사이에서, 가.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2. 5.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각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본소에 관한 비용은 위 피고(반소원고)가, 반소에 관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가, 반소에 관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와 피고 B, C, D 및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80%는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반소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B, C, D 및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1. 원고, 피고 회사 및 나머지 피고들은 F, G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년 금제160호로 공탁한 1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이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2. 5.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내지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취소하고,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원고의 반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회사의 반소] 1.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5,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2. 5.경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5,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각 채권의 발생

1) 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참가인은 2019. 10. 14.경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피고와 함께 H을 운영하는 I과 사이에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의 기업일반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42,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9. 10. 14.부터 2020. 10.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J은행 성서지점은 2019. 12. 5. 참가인에게 2019. 12. 4. 신용보증사고(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I과 피고 B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참가인은 2020. 2. 10.

J은행에 채무원리금 426,053,4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참가인은 I과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차전405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23. 'I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426,454,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2020. 4. 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20. 4. 21. 확정되었다.

2) 피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피고 회사는 2019. 8. 30. I 및 피고 B와 사이에 금형복합기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9,500,000원, 2019. 9. 26. 중도금 내지 정산금으로 66,000,000원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H으로 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는 위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은행을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2019. 8. 30. 발행한 어음의 결제금액은 위 계약금 액수와 동일하고 만기일은 2019. 12. 31.이며, 2019. 10. 10. 발행한 어음의 결제금액은 위 중도금 내지 정산금의 액수와 동일하고 만기일은 2020. 1. 31.이다(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어음은 지급되지 않아 부도처리되었다.

피고 회사는 I과 피고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72617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 5. 26. 'I 및 피고 B가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6. 16. 확정되었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통지

1) 피고 B는 2019. 6. 11. F, G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4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21. 2. 22.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6. 7.부터 2019. 11. 14. I 또는 피고 B에게 21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하였고, 2019. 11. 14. I 및 피고 B와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송금한 금전의 합계에서 I 또는 피고 B가

입금한 금전을 뺀 잔액 합계 250,974,995원을 차용금으로 정하여 2019. 11. 30.까지 변제하되, 변제기를 초과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피고 B는 2019. 12. 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117,974,995원을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6. 위 계약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N 등부 2019년 제677호로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9. 12. 5. 피고 B를 대리하여 F, G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9. 12. 9. F, G에게 도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F, G 및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2809호로 양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1. 9. 8.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F, G에게 인도하고, F, G는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974,99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아파트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9. 28. 확정되었다.

다. F, G의 혼합공탁

1) F, G는 2022. 1. 2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하므로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및 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년 금제160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40,000,000원 중 O조합의 질권 설정 금액 1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앞서 본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다).

2) F, G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한 채권가압류, 압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	2020. 1. 31.	20,460,0001) 해당 가압류결정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단50024)상 청구금액의 총액은 40,920,000원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이 20,46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단50024
2	피고 D	2020. 11. 18.	27,174,260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22632
3	피고 회사	2021. 7. 13.	59,528,8372) 해당 압류결정문(대구지방법원 2021타채215549)상 청구금액은 119,057,871원인데 채무자가 I, 피고 B 2인이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위 청구금액의 절반을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으로	대구지방법원 2021타채215549

1	피고 C	2020. 1. 31.	20,460,0001) 해당 가압류결정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단50024)상 청구금액의 총액은 40,920,000원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이 20,46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단50024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참가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7532호로 피고 B를 채무자로, F, G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44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20. 1. 11. F, G에게 송달되었다. F, G는 참가인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공탁을 처음 접수할 당시에는 누락하였으나 2022. 6. 23. 압류 목록에 위 가압류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당사자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을라 제1, 2, 4, 5, 7호증, 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논의의 전제 및 판단의 순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그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그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 청구 판단 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소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축을 피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원고는 2019. 12. 5. 피고 B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청구를 다투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위 청구를 다투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를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내지 피고 회사의 반소 중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인용여부에 따라 이 사건 본소 및 원고의 반소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 앞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내지 피고 회사의 반소 중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부분에 대해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참가인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2019. 12. 4.

발생함으로써 피고 B의 위 신용보증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무렵 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병 제1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 설령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9. 12. 5. 이전에 이미 참가인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무렵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였으며(이하에서 상술한다) 그로부터 시간적으로 근접한 2개월 후 2020. 2. 10. 참가인이 대위변제를 변제를 하여 사후구상권이 발생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후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가인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사후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현실화되어 사후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회사의 피보전채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하는바(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금형복합기의 제조·납품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었으므로 이미 물품대금채권이 성립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어음의 교부로 위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어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교부되어 만기일에 지급제시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에 따른 어음금채권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각 어음에 기한 어음금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내지 어음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2)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올라 제7호증, 병 제7, 8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P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O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틀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을 전부 매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렵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K은행에 대한 1,118,610,000원의 채무, O조합에 대한 190,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채무, 참가인에 대한 424,130,367원의 사전구상금채무 등이 확인된다.3)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당시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위 채권만으로는 피고 B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채권자 중 하나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온다.

② 원고는 I, 피고 B에게 2013년 무렵부터 금전을 송금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있었지만, 그동안 거래관계의 경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임박한 2019. 11. 14.에 와서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경제적 목적에 따른 정당성이나 행위의 의무성, 상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채무 본지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어 위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채무 본지에 의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관련 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직전인 2019. 12. 2.

K은행은 피고 B의 어음지급계좌를 부도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2. 3. 피고 B는 자신의 모든 부동산 재산을 매각하였으며, 2019. 12.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무렵에는 확정적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B의 자력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무렵에 체결된 점, 원고와 I, 피고 B는 2013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위 채권양도 무렵에 임박해서야 그간의 금전관계를 모두 금전소비대차로 정리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점, I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 B를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주채무자 I의 자력은 일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피고 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그 이후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인 채권양도의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압류 등이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외에도 채권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인 F, G가 이 사건 공탁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이 사건 채권양도금액에 해당하는 117,974,99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별지 제1항 기재 채권과 같다)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참가인과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본인들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면서(그중 피고 회사는 가액배상을 전제로 해당 채권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직접 양도해줄 것을 구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탁금을 변제받거나 추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참가인과 피고 회사의 청구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 회사의 경우 원물반환은 피고 회사의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 C, D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피고 B, C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채권양도 통지는 2019. 12. 9. 채무자인 F, G에게 도달하였고, 피고 B의 채권자인 피고 D의 채권압류 명령은 2020. 11. 18. 제3채무자 F, G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피고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투므로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 B의 채무액이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에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는 I과 피고 B의 채무액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할채무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송금액과 변제액을 각 채무자의 구분 없이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송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을 117,974,995원(= 피고 B에 대한 송금액 117,000,000원 + 이자 974,995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 D는 피고 B에 대한 최초 송금 시인 2019. 4. 1. 이후 I, 피고 B의 변제금액 27,430,607원 전부를 피고 B의 채무에 충당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변제금 중 일부를 I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변제금을 피고 B의 채무액에는 충당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피고 D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2. 논의의 전제 및 판단의 순서'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판단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데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 이상 그 양도의 전제로써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확인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와 모순 저촉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원상회복 절차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6948(본소), 2022나2046955(반소), 2022나2046962(반소) 판결 참조]. 그렇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앞서 본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기가 피고 회사의 채권압류 명령이 위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기에 앞서는바, 이 법원이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별지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2158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대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인용 여부는 위 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위 반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된다. 따라서 앞서 '가. 원고의 피고 B, C, D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검토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참가인의 위 채권 전부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앞서고, 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에 대해 피고 D와 같은 취지로 다투지만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다.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 B, C, D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참가인은 원고 및 피고 B, C, D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17,974,995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2019. 12. 9. 채무자 F, G에게 도달하였고, 피고 B의 채권자인 참가인의 사전구상금 442,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2020. 1. 11. 제3채무자 F, G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 B의 나머지 채권자 피고 C, D와 피고

회사의 채권가압류 내지 압류 결정은 그 이후 위 제3채무자에게 각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과 원고, 피고 B, C, D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7,974,99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2,025,005원(= 150,000,000원 - 117,974,99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즉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참가인에게 있다.

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5,5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다. 앞서 판단한 대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서 별지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와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남진

별지

- 1) 해당 가압류결정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단50024)상 청구금액의 총액은 40,920,000원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이 20,46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해당 압류결정문(대구지방법원 2021타채215549)상 청구금액은 119,057,871원인데 채무자가 1, 피고 B 2인이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위 청구금액의 절반을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3) 참가인은 J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도 주장하는데, 기록상 위 대출채무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